

심 사 보 고 서

2009. 7. 14.

행정위원회

1. 審 査 經 過

가. 제출일자 : 2009년 6월 23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09년 7월 1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46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2009. 7. 3) 상정 의결

2. 提 案 說 明 的 要 旨 (제 案 說 明 者 : 행 정 국 장 송 요 출)

가. 제안이유

- 2010년 고교선택제에 대비하여 선진화된 교육환경 조성 및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등 다양하게 급증하는 지역주민의 교육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보조기준액을 확대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의 5% 범위내” 에서 “해당연도 예산액의 범위내” 로 확대 (안 제3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용어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권오운)

-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와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근거하여 우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 내용 중 보조기준액을 변화하는 교육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2010년 고교선택제에 대비하여 교육환경 선진화와 우수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함이고,

보조기준액의 범위 등 확대 조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타구 보조기준액 지원 사례와 우리구의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교육경비 지원시 학교시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도움이 되는 방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폭넓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내용 중 일부 용어를 법제처에서 시달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거 정비하였다고 사료됨.

4. 審査結課 : 原案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17 호
----------	---------

제출연월일 : 2009. 6.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2010년 고교선택제에 대비하여 선진화된 교육환경 조성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등 다양하게 급증하는 지역주민의 교육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보조기준액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구가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관내 각급학교 및 교육청으로부터 매년 증액지원을 요구하는 추세인바, 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의 5% 범위내” 에서 “해당연도 예산액의 범위내” 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 (안 제3조)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용어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법률제8852호)

2) 중등교육법 제2조(법률제8917호)

3) 유아교육법 제26조(법률제8852호)

4)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20464호)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합 의 : 필요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09. 5.14 ~ 2009. 6. 3) 결과 :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사무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자치구세의 5% 범위내에서”를 “**해당연도 예산액의 범위내에서**”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영등포구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u>소요되는</u>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u>필요한</u> _____ _____ _____.</p>
<p>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구역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에 <u>소요되는</u>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7. (생략)</p>	<p>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_____ _____ <u>필요한</u> _____ _____ _____ _____</p> <p>1. ~ 7. (현행과 같음)</p>
<p>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총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u>자치구세의 5% 범위 내에서</u>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 시비(구비 분담금 포함)로 지원하는 경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p>	<p>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_____ _____ <u>해당연도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u> _____ _____ _____ _____.</p>

현행	개정안
<p>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키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p>	<p>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제4조에 따른 -----</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라 -----</p> <p>-----</p> <p>-----</p> <p>-----</p> <p>-----</p>
<p>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p> <p>----- 총괄한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